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73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축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 현행 2016. 12. 31. → 개정안 2019. 12. 3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첨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첨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 신규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체육진흥과 체육정책담당 이석주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신중환